

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

1. 투자신탁명: DB 바이오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 [주식] (펀드코드: 17009)

2. 변경 시행일 : 2023.11.14(화)

3. 변경 내용 요약

-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
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(2023.1.1 시행)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(2023.2.20 시행)

4. 변경대비표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			
투자비용	업데이트	-	결산일자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	업데이트	-	결산일자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업데이트	-	최근일자 업데이트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연혁 추가	-	-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(2023.1.1 시행) 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(2023.2.20 시행)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업데이트	-	최근일자 업데이트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모집투자지구 (1) 투자대상	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개정사항 반영	⑧ 증권대여 - 주식 추가 ⑨ 증권차입 - 주식 추가	⑧ 증권대여 <u>주1)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각 목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</u> <u>가. 수익률 증진: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</u> <u>나. 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</u> ⑨ 증권차입 <u>주2) 효율적 운용,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 담보 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모집투자지구 (2) 투자제한	오기 정정	동일종목 투자 나. (생략) <u>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</u> 의 규정에 따른 금융 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	동일종목 투자 나. (생략) <u>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</u> 의 규정에 따른 금융 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
10. 집합투자지구	기업공시서식 작성	위험 추가	<u>증권대차거래 위험</u>

<p>의 투자위험 다. 기타 위험</p>	<p>기준 개정사항 반영</p>		<p><u>증권대차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 증권의 미상환,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u></p>
<p>10. 집합투자기구 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 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	<p>업데이트 및 위험등급 산정기준 보완</p>	<p><u>변동성: 24.91%</u> <u>(2022.11.2 기준)</u></p> <p>2. “중위험자산”은 <u>채권(BBB등급), CP(A3등급)</u> 및 이러한 자산에 주로 투 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수 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.</p> <p>3. “저위험자산”은 국공채, 지방채, 회사 채(A-등급 이상), CP(A2-등급 이상), 현금성 자산 및 이러한 자산에 주로 투 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수 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.</p>	<p><u>변동성: 20.05%</u> <u>(2023.11.2 기준)</u></p> <p>〈투자위험등급 변경내역〉</p> <p>2. “중위험자산”은 <u>채권(BBB-등급 이 상), CP(A3등급 이상),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</u> 및 이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 는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.</p> <p>3. “저위험자산”은 국공채, 지방채, 회사 채(A-등급 이상), CP(A2-등급 이상), <u>법 제4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 채</u>, 현금성 자산 및 이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.</p>
<p>13. 보수 및 수수료 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	<p>업데이트</p>	<p>-</p>	<p>결산일자 업데이트</p>
<p>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(6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</p>	<p>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</p>	<p>- 수령요건 : 55세 이후 <u>10년간</u>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</p> <p>- 연금계좌 세액공제: [납입금액]</p> <p>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400만원</u> 이내. 단, <u>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 세법」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만원 이 내</u></p> <p>② <u>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</u></p> <p>③(생략)</p> <p>- 연금계좌 세액공제: [세액공제]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천만원</u></p>	<p>- 수령요건 : 55세 이후 (<u>삭제</u>) 연간 연 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</p> <p>- 연금계좌 세액공제: [납입금액]</p> <p>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600만원</u> 이내 (<u>이하 삭제</u>)</p> <p>②(<u>삭제</u>)</p> <p>②(중전의 ③과 동일)</p> <p>- 연금계좌 세액공제: [세액공제]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천</u></p>

		<p>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- 분리과세한도 <u>(신설)</u></p> <p>-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: <u>(신설)</u></p> <p><u>*나이별로 5.5~3.3% 원천징수하고, 1,200만원 이상시 종합과세</u></p>	<p><u>500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- 분리과세한도 <u>연 1,2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의 분리과세 중 선택가능(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)</u></p> <p>-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: <u>연금계좌 가입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</u></p> <p><u>(삭제)</u></p>
<p>14.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(7) 수익자에 대한 과세 - 퇴직연금제도의 세제</p>	<p>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</p>	<p>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400만원</u> 이내의 금액)과 <u>연 700만원</u>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, <u>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,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</u>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천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	<p>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600만원</u> 이내의 금액)과 <u>연 900만원</u>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. <u>(이하 삭제)</u>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천500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
<p>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</p>	<p>업데이트</p>	<p><u>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 (http://pension.fss.or.kr)의 “과세제도안내”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u></p>	<p><u>따라서 통합연금포털 (https://100lifeplan.fss.or.kr)의 “연금세제 안내”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</u></p>

(7)수익자에 대한 과세 -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			다.
--	--	--	----
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기업공시서식 개정 사항 반영	- 주식 및 항목 추가	<p>- 주식 및 항목 추가</p> <p><u>주1)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.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,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%(연기준)로 합니다.</u></p> <p><u>주2)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(13기 0백만원, 12기 0백만원, 11기 0백만원 발생)</u></p> <p><u>주3)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(13기 0백만원, 12기 0백만원, 11기 0백만원 발생)</u></p> <p><u><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></u></p> <p><u><주식의 매매회전율></u></p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	업데이트	-	결산일자 업데이트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업데이트	-	결산일자 업데이트
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 사업 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규모	업데이트	-	최근일자 업데이트
3.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. 신탁회사 (3)의무와 책임 - 의무	신탁계약서와의 내용 동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<u>1. 투자설명서가 법령,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</u> <u>2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</u> <u>3.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</u> <u>4. 운용지시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</u> <u>5.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<u>1.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</u> <u>2.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</u> <u>3.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</u> <u>4.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</u> <u>5.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</u> <u>6.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</u> <u>7.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u>

3.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라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	업데이트	-	최근일자 업데이트
--	------	---	-----------

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수익자총회 등 (4)반대매수청구권	오기 정정	①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 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(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)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	①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 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(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)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수익자총회 등 (5)투자신탁의 합병	오기 정정	③다만, '②'에도 불구하고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,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 1.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제223조 제3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할 것 2. ~3. (생략)	③다만, '②'에도 불구하고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법 시행령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,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 1.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법 시행령 제223조 제3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할 것 2. ~3. (중전과 동일)